

## [동남]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신규 채용공고

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경상조사 및 연간·특별조사 전반을 수행할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신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5. 11. 10.

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통계청장

※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(2025. 10. 1.)

### 1. 채용인원 및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

채용분야	근무부서 <sup>1)</sup>	채용인원	채용예정일 <sup>1)</sup>	계약방법(정년)	근로조건	기본급(호봉제)
공무원근로자 (통계조사관)	동남지방통계청 부산본부	5명	2026. 1. 1.(목)	근로계약 (만 60세)	1주 40시간, 주 5일 근무,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	금1,911,650원 (1호봉 기준)
	국가데이터처 창원사무소	1명				
	국가데이터처 진주사무소	1명				

1) 향후 상황에 따라 근무부서(장소)가 변동될 수 있으며 수습기간(채용일로부터 3개월)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정규임용(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)

※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는 『국가데이터처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』, 『국가데이터처 취업규칙』, 『국가데이터처 임금협약서』 등을 따르며 수습근로자의 모든 처우는 공무원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

※ 근무부서

근무부서	주소	관할지역	비고
동남지방통계청 부산본부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	부산	
국가데이터처 창원사무소	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61	창원, 함안, 창녕	
국가데이터처 진주사무소	진주시 진주대로 963	진주, 사천, 하동, 남해, 산청	

## 2. 담당업무

담당업무	세부내용
현장조사 관련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<b>현장 조사업무</b>를 상시적으로 수행</li> <li>- (표본 관리) 조사대상처(응답자)와의 유대관계 형성 및 유지, 신규 조사대상처 설득 등</li> <li>- (자료 수집) 통계조사 자료수집,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, 자료 입력 등</li> <li>- (주요 조사) 광업제조업동향조사, 서비스업동향조사, 가계동향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, 집계조사, 농가경제조사, 어가경제조사,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등</li> <li>○ <b>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</b></li> <li>- (듣고 말하기) 대화 및 설득을 통해 조사업무 완수</li> <li>- (걷기) 일반적인 보행 및 계단 이용 가능</li> <li>- (시력) 조사표의 비교적 작은 글자를 읽을 수 있음, 태블릿PC 자료 입력 처리 가능</li> <li>- (드는 힘/손작업) 조사표류 및 태블릿PC 휴대 가능/조사표 작성 및 태블릿PC 사용 가능</li> </ul>

### □ 수습근로 및 평가

- 수습기간: 채용일부터 3개월
-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
- 수습기간 3개월 종료전 「공무직근로자 수습 평가」 실시
  - 평가자: 담당팀장, 확인자: 부서장
  - 근무 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, 복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
  - 수습 종료 10일 전 시행하는 평가 결과에 의하여 채용 여부 결정
  - 평가결과 미흡에 해당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, 7일 이내 서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

## 3. 채용 방법

1차 서류전형(채용배제자 여부 확인) → 2차 면접전형 → 최종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유무 정보 확인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) → 이중취업 여부 확인(겸업 불가) → 채용 확정(수습기간: 3개월) → 적격성 심사 → 정규 임용

### □ 전형별 점수 기준

1차 서류전형			2차 면접전형
자격증	기타점수 (장애인, 저소득층, 다자녀, 북한이탈주민)	경력, 자기소개서 등	면 접
5	5	90	100

※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의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 관련 가점 적용 없음

- 1차 서류전형
 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-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  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공무수행자로서의 소양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-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  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  - 면접(2차)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  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에 따른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  -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#### 4.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##### 응시 자격요건(판단기준일: 공고일 현재)

- ✓ **경상조사 업무가 가능한 자(대상처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질의, 전산처리 등)**
- ✓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이며 만 60세(정년) 미만인 자
  - ※ 응시연령은 면접일 기준이며, 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 가능
- ✓ 국가데이터처 「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
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✓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✓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✓ 채용기간 동안 겸업 및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
(단,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되는 자는 제외)
- ✓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
## 채용 결격사유

###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
예시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## □ 가점 및 우대사항

○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우대: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
단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 미적용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</li> <li>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</li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</li> <li>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</li> <li>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</li> <li>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</li> <li>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</li> <li>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</li> <li>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</li> <li>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</li> <li>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</li> <li>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</li> </ul>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</li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</li> <li>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</li> <li>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</li> </ul>

※ 국가유공자법 제31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 3(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)④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,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.

- 장애인 우대: 1차 전형에 반영
  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 우대: 1차 전형에 반영
  -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
  - 다자녀 양육자: 만 20세 미만의 자녀 **2명 이상**을 양육하는 자
  - 북한이탈주민: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)

#### □ 불합격 처리 대상

- 채용서류 미비자, 허위 작성자(2년간 불합격 처리)
- 최근 3년간 국가데이터처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자
- 정당한 사유\* 없이 최근 2년간 국가데이터처(소속기관 포함)와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\*\*한 자
  - \* 불가피한 경우로 합리적인 사유(질병, 가족간호, 타지역 이사,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 정규직 채용 등)
  - \*\*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(교육포함) 이전에 포기한 경우는 제외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 5.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무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- 보수: 국가데이터처 공무원근로자 호봉표에 의거
  - 기본 급: 1호봉 기준 1,911,650원
  - 수 당: 정액 급식비(월 140,000원), 표본관리비(월 200,000원), 명절휴가비(연 2회, 설날/추석 각 550,000원)
  - 기 타: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)

## 6. 채용 일정

- 채용공고: '25. 11. 10.(월)~'25. 11. 25.(화) (15일간)
- 지원서 접수: '25. 11. 10.(월)~'25. 11. 25.(화) 18:00 **도착분**
  -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(**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**)
- 1차 서류전형 심사: '25. 12. 4.(목) 14:00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일정 통보: '25. 12. 5.(금) 17:00
  - 나라일터,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(SMS 발송 등)
- 2차 면접전형: '25. 12. 10.(수)~12.(금)

근무부서	면접장소	대기장소	면접예정 일시	비고
동남지방통계청 부산본부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(거제동 501)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9층 소회의실	9층 조사지원과 휴게실	'25.12.10.(수) 14:00~	
국가데이터처 창원사무소	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61 국가데이터처 창원사무소 3층 중회의실	2층 휴게실	'25.12.12.(금) 14:00~	
국가데이터처 진주사무소	진주시 진주대로 963 국가데이터처 진주사무소 1층 통계카페	1층 휴게실	'25.12.11.(목) 14:00~	

※ 문의전화: 051-850-3334 (담당자 이현정)

- 최종합격 발표: '25. 12. 17.(수) 11:00~
  - 합격자 나라일터,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(SMS 발송 등)
- 근로계약 및 채용 전 교육: '26. 1. 2.(금)
  - 근로계약: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 작성
  - 교육: 복무, 보안교육 및 지침서 관련교육 실시
- 수습 근로자 근무시작일: '26. 1. 2.(금) 예정

※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7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'25. 11. 10.(월)~'25. 11. 25.(화) 18:00 도착분
- 접수방법 및 접수처

접수방법	담당자	접수처	전화번호
방문접수 및 등기우편	조사지원과 이현정	(47537)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(거제동 501)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9층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	전화: 051) 850-3334 팩스: 051) 850-3349

- 등기우편: **접수마감일 도착분**에 한하여 접수
-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(**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**)
-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

## 8. 제출서류

- ① [필수]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【첨부1】
- ① [필수] 응시원서 1부【첨부2】
- ② [필수] 자기소개서 1부【첨부3】
- ③ [필수]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1부【첨부4】
- ④ [필수]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)
- ⑤ [필수] 주민등록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)
- ⑥ [해당자] 운전면허증 사본
- ⑦ [해당자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【첨부5】
 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동의자에 한함
- ⑧ [해당자] 경력증명서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)
  - ※ 국가데이터처 및 일반경력증명서 제출
- ⑨ [해당자] 자격사항 증빙서류
- ⑩ [해당자] 우대사항 증빙서류
  - ※ ⑨, ⑩번 증빙서류: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【첨부5】로 대체 가능
 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털에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

□ 자격·우대사항 평가기준 상세 (**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 반영 불가**)

○ 자격증(최대 5점) / 제출서류: 자격증 사본

점수	자격증
5점	빅데이터분석기사, 사회조사분석사1급,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보안기사
3점	사회조사분석사2급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1급, 전산회계운용사1급
1점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, 전자계산기기능사, 전산회계운용사2·3급, 컴퓨터활용능력2급, 워드프로세서

※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

○ 기타점수(최대 5점) / 제출서류: 항목별 참고

항목	점수	제출서류
장애인	3점	장애인증명서
저소득층	2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부모가족세대주 관련 증빙서
다자녀양육자	2점	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<b>2명 이상</b> 보육하고 있는 자)
북한이탈주민	2점	북한이탈주민 확인서

※ 여러 항목에 해당되어도 최대 5점 부여

○ 국가유공자 등(취업 지원 대상자) 가점(5~10점) / 제출서류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 
(단,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가점 미적용)

## 9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채용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,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 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 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 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
- 입사지원서는 **접수 마감기한(25. 11. 25.(화) 18시)까지**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  - 채용담당자가 등기우편 도착 후 접수 번호 안내(**마감일까지 접수 번호 미 안내시 확인 바람**)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최종합격자는 근무부서에서 3개월간 수습을 진행하며, 종료 10일 전 수습 기간 평가를 통하여 정규 채용 여부를 결정함
  - ※ 평가 결과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**문의 사항:**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채용담당자 **이현정 ☎ 051)850-3334**

**【첨부1】 (필수)**

##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

지원부서			성명	서명	응시번호
부산	창원	진주			
				(서명)	

\* 지원부서에 "○" 표시, 중복지원 불가

**■ 작성목록(총괄표)**

목 록	제출 여부
1. <첨부2> 응시원서(필수)	
2. <첨부3> 자기소개서(필수)	
3. <첨부4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필수)	
4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필수)(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)	
5. 주민등록등본(필수)(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)	
6. 운전면허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
7. <첨부5>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당자에 한함)	
8.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	통계청 경력증명서
	일반 경력증명서
9. (우대사항)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	
10. (우대사항) 기타 증빙자료 사본(해당자에 한함) - 장애인, 저소득층, 다자녀양육자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(취업지원대상자)	
<b>※ 유의사항</b> * 제출서류에 대하여 '제출 여부'란에 "○" 표시 후 함께 제출 ** 등기우편 제출 시,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<b>클립</b> 혹은 <b>집게</b> 로 고정하여 제출 (스테이플러 사용금지)	
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과 실제 제출한 서류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                       2025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                     </div>	



## < 응시원서 작성요령 >

※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
0. 응시번호: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1. 성명·성별·생년월일·휴대전화·e-mail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2. 주소: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.
3. e-mail: 본인의 해당 이메일을 “ID@가입회사” 형태로 기재합니다.  
(예) hongildong@hanmail.net
4. 일반 경력사항: 콜센터 근무, 지자체 조사원 등 국가데이터처 이외의 경력을 기재합니다.(기재한 경력은 증명서 제출 필수)
  - \*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
5. 국가데이터처 경력사항(구 통계청 경력사항)  
: 통계조사, 분석, 전화민원 상담원 등 국가데이터처 경력을 기재합니다.  
(기재한 경력은 증명서 제출 필수)
  - \* 나라통계 1.0(<https://www.narastat.kr/>) > 로그인 > 경력증명서 발급
  - \*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(2025. 10. 1.)
6. 자격사항: 자격증명, 등록번호, 취득일자, 시행처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.  
(업무와 관련되는 자격증만 기재)
7. 기타: 저소득층, 국가유공자 등, 장애인, 다자녀 양육자, 북한이탈주민은 해당란에 체크

## <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>

- 작성방법: 지원부서 작성, 1장 이내 준수,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
- 자기소개서 작성 (자유롭게 작성)
  - 지원하는 업무에 대한 경력(국가데이터처 경력 등), 과거 일반경력 등
  - 직무수행 계획, 관련분야 활동·업적 등을 기술하되, 채용 직무에 대한 필요 역량 보유, 안정적 직무수행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
  - 지원동기 및 포부 등
- ※ 유의사항: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【첨부3】 (필수)

## 동남지방통계청 공무원근로자(통계조사관) 채용 자기소개서

업무명	경상 및 연간 특별조사 전반	분야	공무원 근로자 (통계조사관)	지원 부서		응시 번호	미기입	
○ -								
						2025년	월	일
작성자						(인, 서명)		

※ 지원부서 작성, 1장 이내 준수,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



